

근저당권설정계약서 (근저당권자용)

채권최고액 일금 원정 (₩)

■ 부동산의 표시

계약서 말미 기재와 같음

위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(주)미래크레디트대부(이하 “근저당권자”라 한다)와 근저당권설정자 (이하 “설정자”라 한다)은
년 월 일 아래와 같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다.

－ 아 래 －

■채권자 겸 근저당권자

-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85길 13, 3층, 7층 701호 (대치동, 송석빌딩)
- 회 사 명 :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대부
- 사업자등록번호 120-86-42972
- 대표이사 일본국인 나카무라나루키



■채무자

- 주 소 :
- 생년월일 : 년 월 일
- 성 명 : (서명 또는 날인)

■근저당권설정자 (담보제공자)

- 주 소 :
- 생년월일 : 년 월 일
- 성 명 : (서명 또는 날인)

■근저당권설정자 (공동명의자)

- 주 소 :
- 생년월일 : 년 월 일
- 성 명 : (서명 또는 날인)

제 1조 【근저당권의 설정】 설정자는 상기 금액을 채무의 최고액으로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기왕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 날인한 차용금증서·각서·지급증서 등에 의한 일체의 민사채무와 발행·배서·보증·인수한 모든 어음 및 수표금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채무를 갑에 대하여 담보하고자 상기 부동산표시에 기재된 부동산에 다음 내용으로 순위 제 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.

1. 피담보채무의 범위

채권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다음의 두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, 설정자는 그 가운데 근담보에서 정한 채무(이자,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를 포함합니다.)를 담보하기로 합니다.

특정근담보

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다음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

년 월 일 약정서, 년 월 일 약정서

한정근담보

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

거래, 거래, 거래, 거래,

2. 근저당권 결산기

채권자는 근저당권 결산기를 정하는 다음의 세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, 설정자는 형에서 정한 날을 결산기로 하기로 합니다.